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10제1호 중 “장소”를 “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벽 등으로 구획되어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되고,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(건축물대장상 공용면적을 말한다)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거래상대방 등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·출입할 수 있을 것
- 나. 다른 대부업자등이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아닐 것

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잔액과”를 “잔액,”으로, “금액을”을 “금액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”로 한다.

제6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경찰청장(각 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정사업장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 단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3조(소득부채증명서 징구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10(고정사업장 등)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, 인력과 전산설비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	제2조의10(고정사업장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(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소유,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<u>장소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
<u><신 설></u>	<u>가. 벽 등으로 구획되어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되고,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(건축물대장상 공용면적을 말한다)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거래상대방 등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·출입할 수 있을</u>

<신 설>

2. ~ 5. (생 략)

제4조의3(과잉 대부의 금지) ①
(생 략)

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 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.

1. · 2. (생 략)

제6조의5(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

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“시·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· 2. (생 략)

것

나. 다른 대부업자등이 고정
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
장소가 아닐 것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3(과잉 대부의 금지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잔액, -----
--- 금액 및 대부계약을 체결
하는 날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
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
대부받은 금액을 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5(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

① -----

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<u>3. 경찰청장</u> 4. ~ 6. (생략) ② ~ ⑦ (생략)	<u>3. 경찰청장(각 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)</u>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513